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9. 1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8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8월 31일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제1차정례회 제2차위원회 (2006. 9. 1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정 원 배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006.6.29. 대통령령 제19567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수수료 종목의 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수수료 금액 조정(6종)

구분	종목명	단위	수수료(원)		비고
			현행 (조세법)	개정 (시행령)	
1	세목별 납세증명	1건	350	800	수수료 관련 규정
2	지방세 납세증명	1건	350	800	
3	세목별 과세증명	1건	350	800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개년 1호	350	800	금액 조정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개년 1호	350	800	
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개년/ 1필지	350	8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나목, 다목, 사목에 규정된 수수료 종목 중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세목별 납세증명외 5건의 수수료 종목의 금액을 동 규정에 맞게 1건(1개년 1호)당 350원의 수수료를 각각 8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08.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006.6.29. 대통령령 제19567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수수료 종목의 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수수료 금액 조정(6종)

연번	종 목	단 위	수 수수료(원)		비 고
			현 행 (조 례)	개 정 (시행령)	
1	세목별 납세증명	1건	350	800	수수료 관련 규정
2	지방세 납세증명	1건	350	800	
3	세목별 과세증명	1건	350	800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개년 1호	350	800	금액 조정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개년 1호	350	800	
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개년/ 1필지	350	800	

3. 참고사항

가.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006.6.29. 대통령령 제19567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또는 승인 : 필요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1) 입법예고(2006.8.3 ~ 8.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나목중 (1),(2),(3)의 수수료액 “350원”을 각각 “800원”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4),(5)의 수수료액 “350원”을 각각 “800원”으로 하며, 동호사목중 (5)의 수수료액 “350원”을 “8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u>				<u>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u>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3종)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3종)			
종 목	단위	수수료 액	비 고	종 목	단위	수수료 액	비 고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1건	350원		(1) 세목별 납세증명	1건	800원	
(2) 지방세 납세증명	1건	350원		(2) 지방세 납세증명	1건	800원	
(3) 세목별 과세증명	1건	350원		(3)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개년 1호	350원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개년 1호	800원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개년 1호	350원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개년 1호	800원	
라. ~ 바. (생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사.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개년/ 1필지	35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개년/ 1필지	800원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아. ~ 하 (생략)				아. ~ 하 (현행과 같음)			